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605호
2. 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1. 8. 11.
4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### II. 제안이유

-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III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- 다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라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#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학교체육진흥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기 타 : 해당없음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605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시내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그동안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, 일부 학교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는 불법 모금 및 후원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.
-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「학교체육진흥법」을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하였고<sup>1)</sup>,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각종 사업을 통해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내 학교운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, 연수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를 체

1) 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
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행·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학교운동부 내에 있는 불법모금·후원 등의 문제를 다소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[표-1] 서울시내 체육특기학교 운영 현황**

구분	학교수	팀수	인원(명)		
			남	여	합계
초	126	137	1382	472	1854
중	158	215	3387	455	3842
고	110	181	2845	561	3406
합계	394	533	7614	1488	9102

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 1) 조례안의 구성

-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실태조사,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연수지원,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<sup>2)</sup>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'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', 법제처, 2018.6.

## 2)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훈련비 등 지원 유형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 재원은 크게 ‘학교 예산 지원금’, ‘교육청 지원 목적사업비’, ‘학부모 후원금’, ‘외부 지원금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이들 재원은 ‘학교회계’ 또는 ‘학교발전기금’<sup>3)</sup>으로 편성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‘학교발전기금’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, 출전비 등의 목적으로 조성·운영될 수 없는바<sup>4)</sup>, 야구와 같은 많은 코치를 필요로 하는 구기종목과 소수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임 코치를 제외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는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

3)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4조(학교발전기금)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
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2.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
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
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.

1.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
2.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

⑨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4) 서울시교육청, 「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개정(안), 2021.2. 15쪽.

### 3. 발전기금의 사용

\* 지도자(코치 포함) 인건비(수당 포함),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·운영 불가

할 수밖에 없습니다.

- 더욱이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훈련비, 용품구입비, 운동교구 설치비, 시설사용료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 학교에서는 한정된 학교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<sup>5)</sup>.

[표-2] 서울시내 학교운동부(체육특기학교) 운영 지원 현황

(단위:천원)

순	지원 내용	지원액	비고
1	안전교구설비 보수·설치 지원	1,000,000	63교 지원
2	안전교구설비 보수·설치 지원(추경)	2,000,000	노후화·불안전·긴급보수가 필요한 교구 보유교 추가 지원 예정
3	전임코치 배정	13,974,850	293교(401명) 지원
4	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917,051	1인당 25~30만원 지원 (본예산 549,400천원, 국고 367,651천원)
5	전국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619,000	1인당 25~30만원 지원
6	전국동계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36,900	1인당 15~20만원 지원
7	전국학생체육대회지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61,370	1교당 60~70만원 지원
8	동계강화 훈련비	500,000	1인당 10~15만원 지원
합계		19,109,171	

- 따라서 안 제8조는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사용료, 용품구입비 등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학생선수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운동부를 육성·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

5) 연합뉴스, '선수 부족한 인천 일부 학교 운동부...학부모들 부담 가중', 최은지 기자, 2021.6.16. 기사 참조; 연합뉴스, '경기교육청, 불법찬조금 공익신고하면 포상금', 김도운 기자, 2021.3.31. 기사 참조; 일요신문, '뒀돈 챙긴 의혹 전 코치, 관행이었다는 학교...고교 태권도부 '복마전'', 김상래 기자, 2019.11.23. 기사 참조

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01, 2021.8.19.).

[표-3] 학교운동부 운영비 지원 방식

회계 학교운동부 운영비	학교회계				학교발전 기금회계
	수익자 부담금	학교 기본 운영비	교육청 지원 목적사업비	기타	학교발전기금
인건비	○	×	(공립)전임코치○ 일반코치×	×	×
대회출전비	○	○	○	○	○
훈련비	○	○	○	○	○
용품구입비	○	○	○	○	○
기타 제 경비	○	○	○	○	○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 계 법 령

## 학교체육진흥법

[시행 2021. 6. 24.] [법률 제17960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·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학교운동부지도자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(이하 "학교운동부지도자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, 금품·향응 수수(授受)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, 임용, 급여, 신분,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1. 6. 23.] [대통령령 제31790호, 2021. 6. 22., 일부개정]

제64조(학교발전기금)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(이하 "발전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
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2.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
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
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.

1.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
2.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

⑨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